

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2항 중 “내무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 “생활체육과장”을
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